

● 제28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601

I. 조례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 3. 29.
- 다. 회부일 : 2019. 4.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의 교육, 상담 등 지원을 총괄하며 서울시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 법에서 정한 보육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업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3조 제2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영유아보육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 제공과 보육교직원,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는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

- 특히 부모가 아이돌봄 걱정 없이 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6천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역할이 중시되고 있음.

(3) 위탁사무 내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 보육교직원 및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시민의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이용실태조사 등

- 시설·장비·비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규모 : 679.1m²)
- 개소일자 : 2000. 3. 1.
- 이용대상 :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위치도



- 지원시설 :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자료실 등

(5) 민간위탁기간 : 3년(2019. 10. 1. ~ 2022. 9. 30.)

(6)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없음(재위탁 사업 비대상)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767백만원(국비75백만원, '19년)

- 산출근거
 - 인건비 565백만원, 사업비 796백만원, 운영비 406백만원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3조

제13조(구성)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영 26조의 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④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2) 예산조치 : 2019년 민간위탁 예산편성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시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함) 운영에 관한 사무의 현 수탁기관인 “학교법인숙명학원”의 위탁기간('16.10.1~19.9.30, 3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¹⁾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제4조의3²⁾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서울시의회는 그 동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과성 증대를 위해 시의회 동의절차 및 회계감사 의무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권을 강화해왔음.
 - 특히 현행 개정 「민간위탁조례」(2017.7.21.시행)에서는 시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부칙 제2조³⁾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를 통해 “현재까지 한 차례도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또는 재위탁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1999년 최초 위탁 이후 7차례에 걸친 재위탁, 재계약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보고의 형식으로 의회동의를 갈음해왔던 바, 「민간위탁조례」부칙 제2조에 특례조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시장이 위탁하려는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 18명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보육교직원 및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시민의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이용실태조사 등
- 시설·장비·비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1999년 10월에 최초 설치한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 전문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⁴⁾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3조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제2항5)에 따라 설치·운영 중이며, 자세한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현황>

- 위치 :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규모 : 676.5 m^2)
- 조직 : 1센터 3팀 11명(센터장1, 보육전문요원8, 상담전문요원1, 행정원 1)
- 위탁체 : 학교법인 숙명학원
- 추진사업
 - 어린이집지원 : 아동학대예방, 아이즈아서울 맞춤 컨설팅, 보육정보 제공 등
 - 가정양육지원 : 장난감도서관운영, 우리동네 보육반장, 시간제 보육 등
-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 1차 공개경쟁 '99.10.1 ~ '02.9.30(3년,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2차 재 계약 '02.10.1 ~ '05.9.30(3년,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3차 재 계약 '05.10.1 ~ '08.9.30(3년,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4차 공개경쟁 '08.10.1 ~ '11.9.30(3년, 학교법인숙명학원)
 - 5차 공개경쟁 '11.10.1 ~ '14.9.30(3년, 학교법인숙명학원)
 - 6차 재 계약 '14.10.1 ~ '16.9.30(2년, 학교법인숙명학원)
 - 7차 재 계약 '16.10.1 ~ '19.9.30(3년, 학교법인숙명학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6. 4., 2018. 12. 24.>

- 5)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9. 11. 11., 2014. 3. 20.>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⁶⁾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은 같은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판단됨.
- 「민간위탁조례」 제4조⁷⁾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 제공과 보육교직원,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6) 「지방자치법」 제9조(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호⁸⁾에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3조 제2항⁹⁾에서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판단됨.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 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수탁자와 총 4회, 11년간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는 바, 2016년 재위탁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선정심의 결과 차기위탁시 공개모집을 조건으로 승인된 바 있음.
- 한편 「민간위탁조례」 제18조¹⁰⁾에 따라 실시된 “2019년 제1차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에서 “사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인 숙명학원의 해당사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조직이 없으며, 위탁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매우 미미”하다는 개선요청 사항을 차기 수탁자 공개모집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6.4>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9)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3조(구성)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영 26조의 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11. 13., 2012. 5. 22., 2014. 3. 20.>

1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주요내용(2019년 제1차)>

구분	주요내용
우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활성화 이외에 자치구센터 역량강화와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노력확대가 이루어짐 • 위탁사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 추진
개선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인 숙명학원의 해당사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조직이 없으며, 위탁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매우 미미 •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원을 구성하는 개선조치(정규인력 채용시 면접위원을 최소 3인 이상 구성하고 외부위원 2인 이상 참여)가 이루어진 사항은 바람직하나 인원을 특정하기 보다는 외부위원 참여비율 50% 이상으로 개정 필요

4 종합 검토 의견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는 민간 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재위탁 절차를 통해 종합성과평가에서 지적된 위탁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한다면, 보다 질 높고 전문적인 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육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

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과성과 재정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